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 공고

2026. 01. 2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재해예방 투자의 촉진 및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1. 29.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목 적

-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양산품에 대해 제작사, 모델 및 모델별 시장가격 등을 사전 등록하여 제작·판매업체와의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적 사업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 국회,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제출 대상

- (대상 설비)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공정 개선설비,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 ▲화재·폭발 예방 및 대응 설비(위험물 전용 보관함, 화재발생 감지 및 화재경보설비)

<지원불가 설비>

-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 수동 및 전동 이동대차 등 인력 운반설비
-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수공구 등 작업보조용품
-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대상 업체) ▲국내 제작사, ▲국내 판매업체, ▲해외 제작사의 국내 법인*, ▲해외 설비 수입업체(또는 수입 대행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내 법인

3. 제출 서류 (작성 양식 및 제출 가이드라인 별도 안내 예정)

【파일형식 준수】 총괄표 Excel, XML ZIP 파일, 그 외 PDF 파일로 제출

□ 종합 정보 (총괄)

① (총괄표) 제출 내용을 Excel 서식에 맞게 작성

- 모델은 반드시 기본사양(본체)과 옵션사양으로 구분하여 작성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작성

※ ①○○○ 외 1식, 물품대금 등 본체와 옵션 구분이 불가능한 모델, ②본체에 부착되지 않은 단순 부품, 금형, 작업공구 등의 옵션은 모델 등록 불가

- 제출 1회당 최대 모델 개수는 50개(여러 회차에 걸쳐 제출 가능)

② (기업정보)

제출업체	기본서류	추가서류
국내 제작업체	사업자 등록증	-
국내 판매업체		대리점 계약서 + 제작·수입업체 사업자등록증
해외 제작사의 국내 법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해외 설비 수입업체		공급·수입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수입계약서, 총판 계약서, 대리점 계약서(공급권 명시 필수) 등)
수입 대행업체		수입 대행 계획서 + 수입 대행 수수료가 확인되는 자료

□ 기본 정보 (본체, 옵션 각각 모델별 작성)

③ (모델정보) 모델별 카탈로그 또는 세부사양서 등

※ 최초 등록된 모델명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기재 필요

④ (안전인증^(해당시)) 안전인증서(KCs 또는 S마크)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가격 정보** (거래 실적^{⑤~⑧} 또는 제조원가계산서^{⑨, ⑩})

가. 거래실적 : 5건 제출 (본체, 옵션 각각 모델별)

◇ 거래실적 5건 중 3건 이상은 공단 및 타기관의 정부 융자·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간 거래실적이어야 함

⑤ (전자세금계산서) '26년 사업 공고('25.12.31.) 이전 발행분만 인정
- (XML 파일)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 파일 제출 **【별첨1】**

<수입품인 경우, 기거래 실적으로 아래서류도 제출가능>

· 수입세금계산서(수입자 보관용) 및 외국환 거래 계산서(거래명세표), 수입면장(수입신고서), OFFER SHEET,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수출(입)통관거래내역,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⑥ (거래명세서) ⁽¹⁾본체 ⁽²⁾옵션 ⁽³⁾기타경비로 구분된 세부 내역

- (1) 본체 : 해당 모델의 기본사양에 대한 가격 정보
(2) 옵션 : 본체 외에 카달로그에서 확인되는 내장 또는 부착되는 설비로 해당 모델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옵션 가격 정보
(3) 기타경비 : (1)~(2) 외 기타 소요 비용 ※ 해상 운송비(해외 수입) 등

⑦ (계약서) 실거래금액을 반영한 최종 계약서

⑧ (거래사실 확인서) 모델별 실거래사실 및 순수 민간 간 거래실적 여부를 공급자가 확인하여 제출 **【별첨2】**

나. 제조원가계산서 : '25년 이후 신규 모델 또는 옵션에 한함
(본체, 옵션 각각 모델별 작성)

⑨ (제조원가계산서) 제작·수입업체의 도면, 재료비·노무비 등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공단 지정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것만 인정 (원가계산검토보고서가 아님에 주의 요망)

* 공단 지정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추후 공지 예정

⑩ (제출불가 사유 확인서^(옵션제외)) '25년 이후 신규 개발된 모델로서 공단 및 타기관의 정부 융자·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간 거래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제출 ^{【별첨3】}

- 최근 3년('23년~'25년) 해당 품목*의 전체 판매실적 현황 및 '25년 이후 신규 개발 모델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예시) 신규 개발 모델이 프레스인 경우, 해당 품목은 프레스를 말함

<'25년 이후 신규 개발 모델 증빙 자료>

· 안전인증 최초 인증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공공 시험·인증기관 시험성적서(최초 시험 접수일 명기 필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자료, 내부 개발 완료보고서·품의서, ERP·전산 시스템상 최초 품번 생성일, (수입품) 해외 제작사의 개발 확인서 또는 개발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4. 제출 기간·방법 등 안내

○ (제출기간) '26. 1. 30.(금) 10시 ~ 상시

○ (제출방법) 산업안전포털에 제출 **【사업자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안전동행지원사업] →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
(공고·양식 다운로드)

※ (참고) 해당 플랫폼은 '20분 이상 미사용 시' 세션이 자동 종료되므로 입력 내용 보호를 위해 반드시 최종·제출까지 완료해 주세요.

5. 공단 검토 및 모델 등록

○ (검토) 제출 서류는 제출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토 예정

- 등록하고자 하는 본체 또는 옵션이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반려 처리
- 모델명(본체, 옵션 구분),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보완 요청
- 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등록 불가

* 보완 완료 후 검토는 후순위로 반영되오니 신중하게 자료 작성 및 제출 하시기 바람

- (등록) 제작·판매·수입업체, 모델 및 가격 근거 자료 등을 공단에서 검토 완료한 모델에 한해 최종 등록
 - '26년부터 양산품은 등록 모델에 한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결과안내) 산업안전포털 또는 문자 등으로 안내 예정

6. 부정당 행위 등 환수, 참여 제한

- 제출 서류가 허위·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이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델 등록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7. 기타

- 제조원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품목별 본체 또는 옵션이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공단에 사전 문의 요망
- 종합 정보의 총괄표 양식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거래사실 확인서(별첨2) 및 민간거래실적 제출불가 사유 확인서(별첨3)는 사업주(대표자) 자필 서명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안전동행 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시장가격 제출 공고(‘25.11.12.)”에 따라 기 제출한 업체도 동 제도에 따른 새로운 기준에 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 기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정업체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1644-4555

< 공고·총괄표 양식 등 자료 게시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안전동행 지원사업(3개 분야 중 택1)] → [공지사항]

※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발행한 시스템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된 XML 원본 파일 다운로드)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나의 홈택스 | 고객센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현금영수증(가맹점)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입

조회

합계표·통계 조회

주인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열람

자료 신청

본지점·총괄본부 조회권한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대합자료 신청결과 조회

- ## 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서비스입니다.

* 신청한 자료는 다음날 신청목적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출시업장번호	
대표자명	성호(법인명)	한국산업안전연구원
> 신청사유 (한글 50자 이내)		
> 안내 메일 수신 여부: 대할 자료 신청 처리 완료시 안내 메일을 받으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 매입/매출: 매출 - (☐ 원수화)	> 자료구분	> XML 구분
> 작성일자: 달명 - 2025-07-08 ~ 2025-07-08		
거래처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시업장 번호	
세금계산서 종류: 세금계산서		

신청취소 신청하기

- 6 -

3.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4. 신청자료 내려받기

○ 신청일자 설정 → 조회 → 내역 선택 → “자료내려받기” 클릭

5. 자료내려받기

자료내려받기

형식	파일명	건수	자료받기
XML	20250751000000457012542520250710202507024100...	1	내려받기

1 총1건(1/1)

닫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다운로드

※ 파일명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수정없이 저장 후 송부

6. 모델별 XML(전자세금계산서 원본) 파일 ZIP 압축

○ 모델별로 거래처 5개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원본) XML 파일들’을 1개 파일로 압축(ZIP)하여 제출

7. XML 다운로드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26 → 1번(국세청 홈텍스 상담)

【별첨2】

거래사실 확인서

※ 1개의 모델에 대해서만 기재(5개 모델인 경우 5건 작성 필요)

공급자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공급받는자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거래내역(민간 간 거래실적* 여부: ☐ 해당, ☐ 비해당)

구분	거래일자	품목명	모델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본체								
옵션								

* 공단 및 타기관의 정부 용자·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간 거래실적

본 자료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49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로 공급자는 거래내역 및 순수 민간 간 거래실적 여부 등 상기 기재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공 급 자(대표자):

(서명)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이 사 장 귀 하

【별첨3】

민간거래실적 제출불가 사유 확인서

■ 제작업체 현황

제작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제출불가 대상 모델 및 사유

품목명	모델명	제출불가 사유*	증빙 자료
		개발일자 및 민간거래실적 기재	붙임 참조

* 제출불가 사유는 '25년 이후 신규 개발된 모델로서 공단 및 타기관의 정부 융자·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간 거래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붙임 1. 최근 3년('23년~'25년) 해당 품목의 판매실적 현황 등 증빙자료 1부.
2. '25년 이후 신규 개발 모델 증빙자료 1부.

본 자료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49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로 '25년 이후 신규 개발된 모델로서 공단 및 타기관의 정부 융자·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간 거래실적이 3건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제작업체(대표자):

(서명)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이 사 장 귀 하